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18

발의연월일: 2022. 7. 6.

발 의 자: 김주영・김영진・송갑석

신동근 • 양경숙 • 이원욱

장철민 • 전용기 • 정일영

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상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기존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주식·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과 세될 예정임.

이에 원활한 국세 채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한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	
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	
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u>이자소득,</u> 배당소득 또는
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	<u> 금융투자소득</u>
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	
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